
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
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
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
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
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1월 2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
1. 폐지사유

- ☐ 「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」은 세부조항 대부분이 상위법령을
단순히 재기재하는 내용으로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, 투자심사업무는
상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

2. 주요내용

- ☐ 「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」 폐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2월 13일까지**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**서울특별시 중구청장**(참조: 기획조정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
중구 창경궁로17(여관동), 문의전화: 3396-4913, FAX: 3396-8657, 메일: espga@junggu.seoul.kr)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